

2019.07.

2019년 세법개정안 - 국제조세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소득법 §119, 법인법 §93)

□ 개정 전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됨(이하 “원천 판단의 특례 규정”). 원천 판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 사용으로 간주되는 국외 등록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8년 법인세법 개정

위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특허는 등록된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논리(특허권 속 지주의)에 기초하여 국내 미등록(외국 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는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림

□ 개정내용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된 경우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로 보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정의에 “--- 특허·의장·신안·도면 ---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지식 ---”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 “원천 판단의 특례 규정”은 삭제

□ 개정의 효과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에 한·미 조세조약 상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특허 사용료가 아닌 별개의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 과세권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국내 세법의 개정만으로 미국 거주자가 수취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소득법 §119, §156 ①, 법인법 §93, §98 ①)

□ 개정 전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않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③은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

□ 개정내용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 계약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소득(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실 이익 등)은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20% 이나 해당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 특례 세율 적용

□ 개정의 효과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한·미 조세조약 상 국내 미등록 특허 침해 보상대가에 대해 사용료 소득 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국내 세법의 개정만으로 미국 거주자가 수취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침해 보상대가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소득법 §119, 법인법 §93)

□ 개정 전

한·미 양국의 과세당국은 1999년 상호합의를 통해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지국으로 합의

대법원도 상호합의를 존중하여 국내 과세권을 인정

□ 개정내용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에 '부동산 주식(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신설

□ 개정의 효과

정부는 해당 규정의 신설로 기존 과세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한·미 조세조약 상 국내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입장

3.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 (국조법 §3의2 신설)

□ 개정내용

조세조약 상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 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적용을 한다는 원칙을 국조법에 신설

□ 개정 전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위 개정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2. 한쪽 계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 개정의 효과

조세조약의 용어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설 규정으로 인해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

앞에서 설명한 세법개정안 중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과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의 내용은 해당 조세조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국내 세법상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으로 과세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4.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1)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국조법 §12)

□ 개정 전

국제거래 자료(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정내용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 자료제출·보완시까지 매 30일마다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상한을 3억원으로 인상

□ 개정의 효과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입장에서 보면 과거 보다 부담 증가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국조법 §11 ⑦ 신설)

□ 개정내용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미제출시 과세당국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

□ 개정의 효과

납세자가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등 국제거래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과세당국이 국제거래에 대해 자의적인 추정과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국조법 §2의2 ④·⑤ 신설)

□ 개정내용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예를 들어,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적용

□ 개정의 효과

우회거래(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원천세 등 국내 세금을 회피하는(또는 감소시키는)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우회거래를 부인하는 과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국기법 §45의2, 소득법 §156의2, §156의4, §156의6, 법인법 §98의4, §98의5, §98의6)

□ 개정 전

일반 세액의 과오납이나 후발적 사유 발생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미적용 또는 제한세율 미적용에 따른 경정청구는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절차에 따라 진행됨

한편, 소득·법인세법 상 경정청구에는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관청의 보완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명시적으로 부여됨

□ 개정내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를 모두 소득·법인세법 상 경정청구절차로 일원화함

□ 개정의 효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절차가 일원화 된 장점은 있으나, 경정청구권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증대되고 과세관청이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 되는 효과 발생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 §11 ①, 국조령 §7 ①)

□ 개정 전

소득·법인세 신고시 국제거래 관련하여 국제거래 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개별·통합기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개정내용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기업은 국제거래 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

□ 개정의 효과

국제거래 관련 유사·중복 제출 자료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국조법 §27 ④ 삭제, 국조령 §41의3 신설)

□ 개정 전

상호합의 종결 후 상반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는 무효

□ 개정내용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 무효 규정 폐지

또한, 상호합의 종결 전에 납세자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절차 신설

□ 개정의 효과

이번 세법개정으로 납세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상호합의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었으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과 상호합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결과가 우선적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음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7.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국조법 §31)

□ 개정 전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정보를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가능

□ 개정내용

과세당국이 상대국에게 정보 요청시 조세정보에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를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실제 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의 효과

조세정보의 수집·교환 범위가 확대되고 펀드, 신탁, 파트너십등의 실제 소유자정보가 국제적으로 교환되어 국제투자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국조법 §31의4 ①)

□ 개정 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불응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정내용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인상

□ 개정의 효과

조세정보 제출에 대한 이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정보요청에 불응하는 분부터 적용

9.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1) 정보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 (국조법 §31 ⑪)

☐ 개정내용

비거주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회사가 금융정보 획득 및 납세자 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과의 계좌 개설 거절 가능

☐ 개정의 효과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역외탈세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정보제공 의무 분부터 적용

(2)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검사권 규정 (국조법 §31의2)

☐ 개정내용

금융회사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제출한 금융정보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과세당국에 부여함

☐ 개정의 효과

비거주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의무 이행 실효성 확보 기대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국가(예: 미국)에 대한 대응수단 효과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정보제공 의무 분부터 적용

10.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 (조특법 §121의2)

□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세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감면결정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CONTACT



이경근 세무사
02-528-5238
kygelee@yulchon.com



조준영 회계사
02-528-5594
jyjo@yulchon.com



**INNOVATIVE
LAWYERS2018**
ASIA-PACIFIC WINNER



NA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AWARDS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